



Q&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아크결함 회로차단기(Arc Fault Circuit Interrupter)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제품에 해당되는지요?

A

아크결함 회로 차단기(Arc Fault Circuit Interrupter)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제품에 배선용차단기(단락, 과부하 보호용)나 누전차단기(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 과부하, 단락검용 보호)의 기능이 탑재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Q2

면상발열체 자체를 전기안전인증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안전인증 규격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면상발열체에 대한 규격이 없는지요?

A

면상발열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전기용품이 아니며 관련 규격으로는 국제기준인 IEC 60335-2-96이 있어 임의인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상발열체에 콘트롤러(온도조절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전기장판류에 해당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335-2-17입니다.

Q3

매장 내 상담테이블 위 디스플레이용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스탠드램프를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스탠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2008.12.31, 시행규칙 개정공포)된 품목으로 2010.1.1일부터 출고(수입제품의 경우 통관)되는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Q4

실란트(유리글레이징용, 옥실용 등 비초산 타입)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입니까?

A

자율안전확인대상 '접착제'는 「일반 가정 및 학교에서 고무, 목재, 플라스틱, 피혁, 섬유, 금속, 도자기, 유리 등의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접촉시켜 떨어지지 않게 되도록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기계 접착제(에어로졸상, 젤상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기계 접착제란 주원료로 전분계, 단백질계, 수지계, 서규아스팔트계와 같은 천연 유기 재료 및 합성수지계, 합성고무계, 엘라스토머(elastomer), 혼합계, 폴리아로마틱(polyaromatic)계와 같은 합성 유기재를 사용한 접착제를 말하는 것으로, 시멘트류, 실케이트염(sodium silicate)류 등의 무기재료 및 땀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한 접착제는 검사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실란트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접착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수입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수입제품이 「품공법」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품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합니다.